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2. 1.(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 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1. 1. 12.

라. 상정일자 : 제268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년 2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운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신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6항 신설('19.12.3.),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안전분야 협의회 규정 목적과 중앙의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협의회 구성과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 및 제9조)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취지 및 법적근거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안전부패로 규정하고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2018년 10월 30일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¹⁾’를 구성하여 출범하였으며,
- 인천시도 안전부패 근절에 동참하기 위해 2019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²⁾’를 발족하여 안전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감시역량을 결집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가 발족한 반부패 협의회가 출범·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반부패 협의회들의 실질적인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의 구축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³⁾제6항에 근거법령이 신설('19.12.3.)됨에 따라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1)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의 위원장이 되며, 행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 등 13개 중앙부처 감사관과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

2) 인천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구성 (21명)

- (위원장) 시민안전본부장, (위원) 군·구, 지방공기업, 시민단체 등

3) 법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

⑦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구 협의회’ 를 지원하기 위한 사도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⁴⁾가 신설('20.6.2.)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마련된 행정안전부 표준안(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1851, 2020. 7. 29.)에 맞춰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 제명 및 목적 개정

-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근거 등을 반영하여 제명 및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⁵⁾” 이라

- 4) 제86조의2(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전담기구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담기구협의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 ④ 전담기구협의회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 ⑤ 전담기구의 조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담기구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전담기구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안전감찰 개요(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근거) 재난안전법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 제77조(재난관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행정안전부 직제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 (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 (안전감찰 범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예방조치, 응급조치, 안전점검, 재난상황관리, 재난복구 등 재난관리 쏜 단계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임.

-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계획·활동 등의 협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조사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 안전분야 조사활동의 협력 증진 및 안전관리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부실점검·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입법의 간결성 및 축약 오기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 및 안 제3조4호에서 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정안	수정안
<p>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조사 활동 (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p>
<p>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그 밖에 지역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p>1. ~ 3. (제정안과 같음)</p> <p>4. ----- 협의회의 위원장이----- ----- -----</p>

○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시민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 (역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징계 등을 요구하여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및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으로 민간단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자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관리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2019년 12월 12일에 발족한 ‘인천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가 관련법에 따라 ‘협의회’로 변경·구성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이후 구성되는 협의회의 구성·운영계획 및 안전감찰 주요 활동 방향 등 기존과 달라지는 사항과 8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안전감찰 전담기구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자 마련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제3조6)제2항)에 따르면 협의회 위원장은 가급적 부단체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협의회가 구성된 8개 시·도의 위원장⁷⁾은 부단체장인 반면, 본 조례안에는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아닌 ‘시민안전본부장’으로 구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시·도별 협의회 구성 현황》

지역	구성일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수)	실무협의회 설치(규정)	정기회의
인천광역시	구성 중	시민안전본부장	×	80명 이내	○	연 1회 이상
광주광역시	2020.12.15.	행정부시장	×	30명 이내	○	연 1회 이상
울산광역시	2020.12.29.	행정부시장	×	50명 이내	○	연 1회 이상
경기도	2020.12.31.	행정1부지사	×	100명 이내	○	연 1회 이상
충청남도	2020.12.30.	행정부지사	재난안전 실장	30명 이내	○	연 1회 이상
충청북도	2020.12.31.	행정부지사	재난안전 실장	40명 이내	○	연 1회
강원도	2020.12.31.	행정부지사	안전감찰 담당국장	50명 이내	○	연 1회
전라북도	2020.12.31.	행정부지사	도민안전 실장	50명 이내	○	연 1회
경상북도	2021. 1. 4.	행정부지사	×	30명 이내	○	연 2회

6) 표준 조례안 제3조제2항

- 지역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부단체장(또는 감사관)이 된다.

7) 시·도별 협의회 위원장 구성 현황

- 광주(행정부시장), 울산(행정부시장), 경기도(행정1부지사), 충청남도·북도(행정부지사), 강원도(행정부지사), 전라북도(행정부지사), 경상북도(행정부지사)

- 또한, 안 제4조제4항의 따른 자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와 수평적 관계인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협의회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및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추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4조제5항에서 ‘협회의의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안전감찰팀)는 2018년 10월 신설된 안전감찰 기구인 동시에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중복표현으로 불필요한 조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정안	수정안
제4조(협회의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4조(협회의의 구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안 제5조) 임기

- 안 제5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협의회 위원은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및 안전분야 민간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안 제5조에서 명시한 임기 2년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전분야 민간단체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조례입법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 조문 내용 중 ‘공무원’ 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정안	수정안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u>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u> -----.

○ (안 제6조 ~ 제7조) 회의 및 실무협의회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다만, 안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협의회 위원은 평상시 소속 위원으로서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의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및 위원 간 안전감찰 업무에 대한 상호 협조가 가능한 만큼, 조례 해석상 명료하지 않은 안 제6조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사용된 오타 수정(안전→안전) 및 불필요한 문장부호(쉼표) 역시 삭제하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함. (※ 안 제6조제4항 삭제시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 필요)

제정안	수정안
제6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조(회의)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삭제> ④ (제정안과 같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u>안전</u> 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u>위해</u> ,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 <u>안전</u>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u>위해</u> ----- -----.

- 아울러, 안 제7조의 실무협의회 규정은 협의회를 설명하는 조문 다음에 명시하는 것이 조례입법 체계상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7조를 안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7조와 안 제8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8조는 협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⁹⁾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법 제77조¹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9) (인천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총 51개소로 세부현황 별도 첨부(붙임2)

- 인천시, 군·구, 지방공기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생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③ (생략)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에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7. 26.>

- 이는,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권한 등은 협의회가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갖고 있으며, 협의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사활동 개선 등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안 제8조제2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을 직접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타 시·도 조례에도 이러한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4호1)에 따른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협의회 기능에 대한 조례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안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 삭제시 제정안 조문 순서(번호) 수정 필요)

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정안	수정안
<p>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삭제></p>

○ (안 제9조) 위원의 해촉

- 협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 제8조가 삭제되면 불필요한 안 제9조제5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정안	수정안
<p>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p>제9조(위원의 해촉)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삭제>

○ (안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 안 제10조는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 (안 제11조) 수당 등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그동안 인천시는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0월 인천시 안전감찰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2019년 12월에는 ‘인천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발족하여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합동감찰 등 감시역량을 결집하여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러한 ‘인천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최근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안전감찰 사례를 발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부하여 안전감찰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분야 홍보·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부패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안전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의 구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일환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발족한 반부패 협의회는 근거법령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안전감찰 관련 시행령 제86조의2가 신설되어

-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안전분야 조사활동의 협력을 증진하고 안전관리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협의회를 8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구성계획은?
⇒(시민안전본부장) 인천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관 56개 기관과 안전분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60여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임.
- 협의회는 필요해 의해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인지?
⇒(시민안전본부장) 법령 개정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안전감찰 협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환경분야 경우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분야도 이러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지?
⇒(시민안전본부장) 안문협 등 여러 단체가 있으며, 말씀하신 환경단체도 환경안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현재는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가 운영 중인 것인지?
⇒ (시민안전본부장) 인천시, 군·구, 지방공기업, 시민단체 등 21명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임.
-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회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안전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협의회가 법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안전에 대한 틀을 잡고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6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협의회 역할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례입법의 명확성·간결성·체계성을 위한 용어정비 등
- 안 제5조 중 “공무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수정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제5호 삭제 등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인천광역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를”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로 한다.

안 제3조제4호 중 “지역 협의회 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을 “협회의 의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5항 중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를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로 한다.

안 제5조 중 “공무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안전”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를 “위해”로 한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8조 및 안 제7조로 하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u>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u>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조(협의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u>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u>을----- ----- -----.</p>
<p>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u>지역 협의회</u>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 <u>협회의</u>의 위원장----- ----- ----- -----</p>
<p>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④ (생략)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u>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u></p>	<p>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 -- <u>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u></p>
<p>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5조(임기) <u>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u>-----.</p>
<p>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u>안전</u>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u>위해</u>,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8조(실무협의회) ① ----- <u>안전</u>-----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u>위해</u>----- -----.</p>

<p><u>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u>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u>②</u>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u>③</u>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u><삭제></u></p>
<p><u>제9조(위원의 해촉)</u>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u>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u> 	<p><u>제7조(위원의 해촉)</u>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u><삭제></u>
<p><u>제10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u> (생략)</p>	<p><u>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u> (제정안과 같음)</p>
<p><u>제11조(수당 등)</u> (생략)</p>	<p><u>제10조(수당 등)</u> (제정안과 같음)</p>
<p><u>제12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1조(시행규칙)</u> (제정안과 같음)</p>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 활동(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회의 위원장**이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시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제5조(임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